

선수위원회 규정

사단
법인

대한철인3종협회

제정 2010. 01. 30.
개정 2021. 02. 04.

선수위원회 규정

제1조(설치근거) 이 규정은 (사)대한철인3종협회(이하 “본 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협회에 등록된 각급 운동경기부(팀)의 선수에 적용한다.<개정 2021.02.04.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
2. 선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02.04.>
3. 은퇴선수 지원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
4.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<신설 2021.02.04.>
5. 이사회에 선수대표 자격의 이사가 포함되는 경우 그 이사의 선출<신설 2021.02.04.>
6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3명 이하<개정 2021.02.04.>
3.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<개정 2021.02.04.>

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02.04.>

1. 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위원, 위촉위원,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<신설 2021.02.04.>
2. 위촉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21.02.04.>

3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<신설 2021.02.04.>
4.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신설 2021.02.04.>
5. 남·여 위원의 비율은 각 3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<신설 2021.02.04.>
6. 위원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, 세계 반도핑 규약(World Anti-Doping Code)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.<신설 2021.02.04.>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선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신설 2021.02.04.>
-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회장이 협회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<개정 2021.02.04.>
- 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1.02.04.>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1.02.04.>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4년(연임가능)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.<개정 2021.02.04.>
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개정 2021.02.04.>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신설 2021.02.04.>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개정 2021.02.04.>
4.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신설 2021.02.04.>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<신설 2021.02.04.>

제9조(회의소집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.<신설 2021.02.04.>

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1.02.04.>

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위원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협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2.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
3.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.

[전문개정 2021.02.04.]

제12조의2(의무사항) 위원회의 위원,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할 수 없다.
2.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.

<본조신설 2021.02.04.>

제13조(수당 지급 등) 협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<본조신설 2021.02.04.>

부 칙(2010. 01. 30.)

제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,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폐지되며, 이 규정에 의한 선수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제3조(선수등록규정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선수등록 규정 제2장 (선수자격심의위원회)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을 대체된다.

부 칙(2021. 02. 04.)

제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